

#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37
----------	-------

제출년월일 : 2023. 8. 14.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개정하고
-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태계 보전 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며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용자 경로 및 이차보전 사업의 보조 기준의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 (안 제4조)
-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사업 (안 제4조)
- 이차차액 보조사업 조항 수정 및 삭제 (안 제4조의4)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06. 14. ~ 2023. 07. 0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4】
- 방침결정문 : 【붙임 5】

## [붙임 1]

#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산의제21과” 를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의4제1항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경기도조례” 라 한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을 “환경오염방지시설” 로,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를 “이자를 보조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을 “(기금의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를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담당·팀장 직위·성명	환경정책팀장 박승규
	담당자 성명·전화	최배혁 (행정 2888)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안산의제21과</u> 관련된 사업	3. <u>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u> -----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u>탄소중립·녹색성장</u> 관련 사업
<신설>	12. 「 <u>자연환경보전법</u> 」 제49조의 <u>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u>
11. (생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u>「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이하 “ <u>경기도조례</u> ”라 한다)에 따른 <u>환경오염방지시설</u> 설치 자금(대기·수질·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개선· 구입 자금을 용자받을 경우 용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u>이자액 중 일부를</u> 보조 할 수 있다.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 <u>환경오염방지시설</u> ----- ----- ----- ----- ----- ----- ----- ----- ----- ----- <u>이자를</u>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수질·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개선·구입 자금을 융자 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시장은 제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폐열에너지 회수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로 악취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자 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 공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